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명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97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4.

발 의 자 : 강명구 · 임종득 · 서지영
신동욱 · 구자근 · 김재섭
김승수 · 박성훈 · 김용태
김기현 · 윤영석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의 기간 외에 조국 수호와 치안 유지를 위하여 희생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경우 그 자녀들은 자녀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 또한,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은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로서, 그 희생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전사·순직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고,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녀에게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·공헌한 분들과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의3 및 제42조제7항

등).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전몰군경자녀수당

제16조의3의 제목 “(6·25전몰군경자녀수당)”을 “(전몰군경자녀수당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”을 “전몰군경”으로, “자녀에게 6·25전몰군경자녀수당을”을 “자녀 또는 손자녀(자녀 모두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전몰군경자녀수당을”로, “자녀가”를 “자녀 또는 손자녀가”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자녀에게는”을 “자녀 또는 손자녀에게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“간”을 “또는 손자녀 간”으로, “중”을 “또는 손자녀 중”으로, “6·25전몰군경자녀수당을”을 각각 “전몰군경자녀수당을”로 하며, 같은 호 후단 중 “간”을 “또는 손자녀 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자녀에게 6·25전몰군경자녀수당을”을 “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전몰군경자녀수당을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“6·25전몰군경자녀수

당을 자녀에게”를 “전몰군경자녀수당을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6·25전몰군경자녀수당을”을 “전몰군경자녀수당을”로, “자녀에게”를 “자녀 또는 손자녀에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6·25전몰군경자녀수당은”을 “전몰군경자녀수당은”으로 한다.

제42조제7항제4호 전단 중 “6·25전몰군경자녀수당을”을 “전몰군경자녀수당을”로 한다.

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보상”을 “보상(제16조의3에 따라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손자녀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을 포함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손자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몰군경자녀수당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6·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보훈급여금의 종류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3. (생략) 4. <u>6·25전몰군경자녀수당</u> 5. ~ 8. (생략)	제11조(보훈급여금의 종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전몰군경자녀수당</u> 5. ~ 8. (현행과 같음)
제16조의3(<u>6·25전몰군경자녀수당</u>) ① <u>1953년 7월 27일 이전</u> <u>및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</u> <u>설립에 관한 법률」 별표에 따</u> <u>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</u> <u>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</u> <u>경의 자녀에게 6·25전몰군경</u> <u>자녀수당을 지급하되, 자녀가 2</u> <u>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</u> <u>서에 따라 지급한다. 다만, 유</u> <u>족 중 한 사람이 보상금을 지</u> <u>급받고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</u> <u>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</u> <u>아니한다.</u> 1. <u>자녀 간 협의에 의하여 자녀</u> <u>중 1명을 6·25전몰군경자녀</u>	제16조의3(<u>전몰군경자녀수당</u>) ① <u>전몰군경-----자</u> <u>녀 또는 손자녀(자녀 모두 사</u> <u>망한 경우에 한정한다. 이하 이</u> <u>조에서 같다)에게 전몰군경자</u> <u>녀수당을-----자녀 또는</u> <u>손자녀가-----</u> <u>-----.</u> <u>-----</u> <u>-----</u> <u>-----자녀 또는 손</u> <u>자녀에게는-----.</u> 1. ----- <u>또는 손자녀 간-----</u> <u>-----또는 손자녀 중</u>

수당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6·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. 이 경우 자녀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.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6·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.

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6·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. 이 경우 수당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분할하여 6·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지급받던

-----전몰군경자녀수당을-----

-----전몰군경자녀수당을-----.

---또는 손자녀 간-----

---.

2. -----

-----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전몰군경자녀수당을-----

3. -----

-----전몰군경자녀수당을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-----

-----.

② -----

--전몰군경자녀수당을-----

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남아 있는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 하여 지급한다.

③ 6·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, 그 지급액, 지급방법,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2조(진료) ① ~ ⑥ (생 략)

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,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

1. ~ 3. (생 략)

4. 제16조의3제1항의 6·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로서 75세 이상인 사람. 이 경우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.

⑧ (생 략)

자녀 또는 손자녀에게-----
-----.

③ 전몰군경자녀수당은-----

-----.

제42조(진료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

-----.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전몰군경자녀수당을-----

-----.
-----.

⑧ (현행과 같음)

제79조(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)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<u>보상</u> 을 하지 아니한다.	제79조(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보상</u> (제16조의3에 따라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손자녀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을 포함한다)- -----.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. <u><후단 신설></u>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<u>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손자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u>
③ ~ ⑦ (생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